

서울창업디딤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1188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3년 8월 14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1. 제안이유

- 서울시는 동북권역 창업생태계 활성화와 우수 예비 창업자 및 창업 초기기업을 발굴 및 육성하고자 2013년 11월부터 「서울창업디딤터」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
- 기존 수탁기관의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, 역량있는 민간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유망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유치·사업화, 판로개척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,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시설 개요

시설명	서울창업디딤터
소재지	노원구 동일로 174길27
시설규모	연면적 2,399.89㎡ (지하 1층, 지상 3층)
시설용도	창업지원시설(기업 입주공간, 공유공간 등)

나. 사업개요

- 위탁사무 : 서울창업디딤터 운영
- 위탁기간 : 3년(2024.1.1.~2026.12.31.)
- 위탁유형 : 시설형 민간위탁
-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
- 소요예산 : 1,596백만원('24년 예산)

다. 민간위탁(재위탁)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

- 추진근거
 - 지방자치법 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 제3항
 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 -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 제18조(창업지원시설의 설치·운영 등)
- 추진경위
 - 2013.4. : 제246회 임시회 민간위탁 동의안(신규) 원안가결
 - 2013.11. : 서울테크노파크 컨소시엄 협약체결('13.11.~'16.10.)
 - 2014.5. : 아스피린센터 개관
 - 2016.11. : 광운대 산학협력단 협약체결('16.11.~'19.10.)
 - 2017.6. : 서울창업디딤터 명칭 변경
 - 2019.6. : 제287회 정례회 민간위탁 동의안(재위탁) 원안 가결
 - 2019.11. : 광운대 산학협력단 협약체결('19.11.~'21.10.)
 - 2021.10. : 광운대 산학협력단 협약체결('21.11.~'23.12.)
 - 2023. 6. : 민간위탁 재위탁 방침 수립
 - 2023. 7. :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개최·의결

○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 필요성

- 서울창업디딤터는 예비 및 초기 창업기업의 발굴·육성 및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동북권역 대학 인프라를 활용한 캠퍼스타운 졸업기업 후속 성장지원, 에듀테크 분야 특화 스타트업 육성 업무를 수행해 왔음
- 동북권역 예비·초기 창업 인큐베이팅 거점으로서 대학 및 유관기관과 협력 프로그램 운영 등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예비·초기 창업기업보육에 탁월한 역량을 보유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

라.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

○ 서울창업디딤터 입주기업 보육 등 사업추진 전반

- 입주기업 심사·선발 등 창업기업 보육 지원
- 운영 활성화를 위한 창업보육 프로그램 기획·운영

○ 에듀테크 특화 거점 조성(입주기간 제공 및 성장 컨설팅 지원)

- 민간 파트너사 협력 에듀테크 특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
- 수탁기관 자체 투자펀드 및 파트너사 연계 투자유치 지원

○ 서울창업디딤터의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

- 안전대책 수립, 재난대책 매뉴얼 작성 등 시설물 안전관리 총괄
- 경비 및 시설 유지보수 총괄 등(안전점검, 보안관리 등)

○ 기타 위·수탁사무와 관련 "위탁자"와 "수탁자"가 협의한 사항

마.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('23.7.20. 개최)심의 결과 : 적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- 「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」

제18조(창업지원시설의 설치·운영 등) ② 시장은 창업지원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나. 예산조치 : 2024년 민간위탁금 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경제정책실 창업정책과 송정민(☎ 2133-4887)